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40
----------	------

2017. 9.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17. 7. 26 이 석주 의원 발의 (2017. 7. 27 회부)

## 2. 제안이유

-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디어폴 형태의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일명 “미디어 폴”, 이하 “가로영상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7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쉼터</u> 3.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쉼터,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가로영상시설”은 현재 강남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유일하며, 이 시설은 기존의 가로시설물을 통합하는 최첨단 영상시설물 구축으로 서울의 디지털 문화명소 조성이 그 목적인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sup>1)</sup>에 따라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sup>2)</sup> 당초 22기를 설치하였으나 현재에는 18기<sup>3)</sup>가 남아 있음.

- 강남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총 85억 4백만원<sup>4)</sup>의 예산이

1)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18호, 2007.7.31.)에 따른 추진 사업은 공공시설물 개선과 광고물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2)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 제안서 공모계획(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방침 제8호, 2007.8.2.)

3) 신분당선 연장공사(강남~신사 구간)로 4기를 철거하였음.

투입되었고, 이 중 가로영상시설의 설치비로는 총 68억 8천 2백만원(시비 29억 4천 2백만원, 구비 40억 4천만원)이 소요되었음.

- 이 시설물은 설치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2009.3.7. 개정)<sup>5)</sup>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어 상업광고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2012.7.9)으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설치 근거가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 9월 28일 시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이 시설을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기존에 시·군·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에 따라 5년 동안(2013.4.1. ~2018.3.31.)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예<sup>6)</sup>하였음.
- 유예 만료기간이 곧 도래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는 이 시설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일반적인 정보나 미디어아트 및 문화관광 콘셉츠만을 송출할 경우, 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을 강

4) 시비 2,942백만원, 구비 5,562백만원

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009.3.7 일부개정)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5.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

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제2013-81호, 2013.4.1. 시행) 3. 부 칙

**다 (특정구역 광고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자치구별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완화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남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영상시설이 이미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안내도, 교통정보안내판, 시계탑, 조명탑’ 등의 기능<sup>7)</sup>을 수행하고 있고,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세금을 절감하고 나아가 기존 서울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2012년 시 광고물조례 제정 당시 광고가능 공공시설물을 정하면서 이 시설을 배제하고 5년 동안 광고가 가능하도록 유예한 것은 시설유지비 재정 자급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가로영상시설의 광고가능 공공시설물 지정에 대해서는 설치 배경이나 사업취지, 조례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됨.

---

7) 주요 기능으로는 관광안내도 등 관광정보 제공, 교통정보 안내, 미디어아트 및 각종 문화 관광 콘텐츠 상영, 관광 랜드마크 기능 및 우수한 야간 경관 제공(빛의 거리)임.